

# 함께 하는 FTA 소식

[ 2019 vol. 10 ]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보팀 ☎ 064-710-4091~3

## I 원산지관리시스템으로 사전 대비

### □ FTA 협정별로 상이한 검증 방법과 절차

- 원산지 사후검증 방법과 절차는 FTA 협정별로 다르다. 먼저, 직접검증은 수입국의 관세 당국이 자국 수입자뿐 아니라 수출국의 수출자나 생산자를 대상으로 직접 원산지 검증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한·미 FTA가 여기에 해당된다. 원산지증명서 및 관련 증빙 자료를 요청하는 서면조사(검증)통지서를 수출국 관세 당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검증 대상자에게 발송한다. 이러한 서면검증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지검증을 실시한다. 간접검증은 수입국이 수출국의 관세 당국에 수출국의 수출자나 생산자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의뢰(위탁)해 간접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이다. 수입국이 수출국의 관세 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위탁·실시하며, 수입국 세관의 참여도 가능하다. 대표적인 예로 한·EU FTA, 한·중 FTA 등을 들 수 있다.
- 마지막으로 혼합검증은 직접검증과 간접검증을 혼합해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선(先)간접검증-후(後)직접검증과 간접검증 또는 직접검증 중 선택하는 방식이 있다. 선간접검증-후직접검증은 수입국 관세 당국이 수출국에 원산지 검증을 위탁한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때 수출국의 수출자나 생산자를 대상으로 직접검증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ASEAN FTA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한·페루 FTA, 한·콜롬비아 FTA의 경우에는 수입국 관세 당국이 직접검증과 간접검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 관세청 ‘FTA-PASS’로 원산지 증빙자료 미리 보관

- FTA 원산지 사후검증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다시 말해, FTA 특혜관세를 적용할 때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 추징, 가산세,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원산지 관리 필요성을 알고는 있지만 사후검증 대응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정부의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먼저 관세청에서 무료로 보급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인 ‘FTA-PASS ([www.ftapass.or.kr](http://www.ftapass.or.kr))’에 가입하면 원산지확인서 송수신과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물론, 사후검증에 대비한 원산지 증빙자료를 보관할 수 있다.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후, 기준·거래 정보를 입력하면 FTA 계약 상대국 원산지 판정과 원산지증명서, 원산지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발급 및 보관할 수 있다.
-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이 운영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인 ‘FTA KOREA([fta.utradehub.or.kr](http://fta.utradehub.or.kr))’ 역시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 증빙자료 자동 보관을 통해 사후검증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한국무역협회 FTA 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OK FTA 컨설팅 사업’의 Upgrade 컨설팅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사후검증에 대비한 원산지 관리 실태 점검 및 개선, 신규 활용 협정과 품목에 대한 원산지 관리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의 2020년 추진 일정은 FTA 종합지원센터([okfta.kita.net](http://okfta.kita.net)) 또는 FTA 콜센터(138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II WTO 반덤핑 협정

### □ 왜 싸게 파는가?

- “사장님이 미쳤어요”라는 문구가 여간 반갑지 않다. 업자에겐 폐업의 아픔이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이처럼 좋은 기회가 없으니 참 아이러니하다. 시장의 논리라는 게 그러하다. 애덤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이 얼마나 노련한지 가격이 내려가면 시장 논리에 따라 수요는 자연스레 커지게 마련이다. 당연히 경쟁사의 제품 수요는 줄어들게 된다. 그만큼 제품의 가격이 곧 경쟁력인 셈이다. 국가 간 무역에서도 이런 일은 빈번하게 발생한다. 보통 기업은 제품을 만들어 국내에도 유통하고 해외에도 수출하는데, 이때 해외에 수출한 제품이 국내에서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될 때가 있다. 바로 ‘덤핑(dumping)’이다.

- 경제적으로 보면 딱히 나쁘지 않다. 특히 좋은 제품이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경우라면 소비자 복지는 크게 증대한다. 그러나 덤핑이라는 불공정한 무역 행위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점유율을 확대한 기업은 경쟁사의 도태를 초래하며 중국에는 독점(monopoly)적 지위를 갖는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이 가격을 선정하는 데 주도권을 갖고 소비자로서는 낮은 가격의 기쁨도 잠시, 해당 기업의 가격정책에 종속되고 만다. 물론 꼭 이런 전략적 계산에서만 덤핑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은 국내 재고 처리나 외화 확보를 위해 덤핑을 하기도 한다. WTO 회원국은 기본적으로 시장 개방의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품의 무분별한 덤핑에 대비한 일종의 보호책이 필요하다. 반덤핑(anti-dumping) 관세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덤핑 피해로부터 구제해줄 무역구제제도의 하나로, 낮아질 대로 낮아진 덤핑 가격에 관세를 더해 정상 가격으로 유도하는 방식이다.

## □ 국제무역체제에서의 반덤핑 논의

- 1948년 발효된 최초의 국제무역협정 GATT는 제6조에서 반덤핑 관세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으로 1960~1970년대 케네디 라운드와 도쿄라운드에서 이를 발전시키게 되었고, 1995년 WTO가 설립 되면서 별도의 반덤핑 협정이 최종 탄생한다. 2016년 12월까지 WTO 회원국에 의해서만 5,000건 이상의 반덤핑 조사 절차가 시작되었고, 2019년 9월 기준 총 587건의 WTO 분쟁 중 반덤핑 협정이 관계된 경우만 132건이다.

## □ 반덤핑 조치의 발동 요건과 과정

- 덤핑으로 수출한 국가와 그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취하기 위해선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① 정상 가격(수출국의 국내 가격)과 수출 가격을 비교해 수출 가격이 더 낮아 덤핑이 존재할 것, ② 국내 산업에 덤핑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것, ③ 덤핑과 피해(우려) 간 인과관계가 성립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특정 기간 동안의 해당 제품 거래에 대한 가격을 바탕으로 덤핑 마진율을 계산하고 그 여부를 결정하는데, 그 식은 ‘(정상 가격-수출 가격)/수출 가격×100’과 같다. 여기서 나온 덤핑 마진율이 2% 이하인 경우에는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 위 세 가지 상황이 모두 확인되면 마침내 덤핑 조사가 수출국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이 조사 또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반덤핑 조사에 대한 질의서 응답을 서면 형식으로 증거와 함께 30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제출하게 된다. 필요한 경우엔 현장 조사도 진행한다. 조사 기간은 통상적으로 1년 이내로 1년 반을 넘을 수는 없다. 결과에 따라 예비 판정과 잠정 조치, 최종 판정과 그에 따른 조치로 귀결되는데 반덤핑 관세의 지속 부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부과일 기준 5년 이내에 해당 조치를 종결하도록 하는데 이를 ‘일몰 조항(Sunset Clause)’이라고 한다.

## □ 반덤핑 협정의 향후 과제

- 1948년 발효된 GATT가 1995년 WTO 체제로 패러다임 시프트를 겪는 과정에서 반덤핑과 관련한 국제 통상 규범은 한층 정교화되고 고도화되었다. 그럼에도 각국의 덤핑 관행 역시 나름의 진화로 점점 더 교묘해지고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부조리를 낳았다. 우회덤핑이나 미국의 제로잉(zeroing), 특별시장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 PMS) 및 불리한 가용 정보(Adverse Facts Available, AFA), 표적덤핑(Targeted Dumping) 등이 대표 사례다. 이에 대해 반덤핑 제도에 과감하게 메스를 대야 하지만 WTO DDA 협상 표류도 쉽지 않은 과제다.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은 ‘덤핑’과 관련한 각종 권모술수가 여기저기 ‘덤핑’되고 있는 상황을 언제까지 지켜만 봐야 할지 고민이 아닐 수 없다.

### Ⅲ 무역 소식 (TRADE NEWS)

#### □ 중국 하얼빈·창춘에 무역관 신설

- KOTRA가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과 지린성 창춘에 새롭게 무역관을 열었다. 이로써 KOTRA는 중국 총 21개 지역에 우리 중소·중견기업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번 무역관 개설로 한국 기업의 중국 동북 지역 수출 및 투자협력 효과가 기대된다. 먼저 9월 24일 개최된 하얼빈무역관 개관식에는 권평오 KOTRA 사장과 장하성 주중국 대사 등 고위 관계자와 양국 기업인 100여 명이 자리를 빛냈다. 이어 9월 25일 창춘무역관 개관식에도 장즈권 지린성 부성장과 류신 창춘시장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하얼빈은 소비재, 식품 가공, 바이오메디컬,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유망하고, 창춘은 자동차 부품, 기계 장비, 헬스케어 분야가 촉망받는 지역이다. KOTRA는 현지 자유무역시범구를 활용해 한국 기업의 미개척 시장 진출을 늘릴 계획이다.

#### □ 호주 식품박람회서 한국 농식품 홍보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9일부터 12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2019 호주식품박람회(Fine Food Australia)'에 참가해 한국 농식품을 홍보했다. 이날 참석한 18개 국내 수출업체는 김치를 비롯해 인삼과 버섯 등 다양한 품목을 선보여 총 1,050만 달러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 국내 수출업체들은 세계적으로 가정 간편식을 선호하는 추세에 맞춰 소포장으로 즉석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제품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특히 버섯칩, 홍삼 캡슐과 드링크류, 보관이 용이한 용기에 든 김치가 외국 바이어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